

대구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1489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성협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2.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3.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1. 30. “C는 원고에게 78,019,702원과 그 중 33,706,145원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4.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F, G, H가 있었으며, 그 중 G은 2016. 11. 18. 사망하였는데, G의 상속인으로는 I, J, K, L이 있었다.

다. 피고, C, F, H, I, J, K, L은 2021. 2. 19.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전부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1,895,340원¹⁾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1. 2. 22. 접수 제4338호로 2007.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이 사망한 2007. 4. 9.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본안 전 항변).

2) 망인은 생전에 C에게 11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였고, 이는 C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21. 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2021. 2. 19.경 비로소 작성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자로 '2007. 4. 9.'이 기재된 것은 등기예규 제438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대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당초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 상속받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단독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일 무렵 상속인들 전원이 피고 주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망인의 자녀인 G의 의사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때는 이 사건 분할협약서가 작성된 2021. 2. 19.경 무렵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C의 무자력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이 된다.

2) 나아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M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2) C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F, G, H가 있었으므로,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11, C 등 나머지 자녀들이 각 2/11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합계 81,895,34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등기 당시인 2021. 2. 19.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1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81,895,34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C의 특별수익의 존부

(1) C가 2003. 1. 15.경부터 2006. 12. 5.경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24,529,000원(= 2003년도 12,309,000원 + 2004년도 4,030,000원 + 2005년도 4,310,000원 + 2006년도 3,880,000원)을 지급 내지 송금받아 이를 특별수익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특별수익액은 24,529,000원이 된다(원고는 2022. 5. 26. 열린 변론기일에서 위 특별수익 사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2022.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다가 2022. 10. 18.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2022. 10.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는 C가 위 24,529,000원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24,529,000원을 초과한 재산을 C에게 증여하였다거나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인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따라서 그 특별수익한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한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C가 증여받은 24,529,000원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2007. 4. 9.)인 2007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90.9이고, C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24,529,000원의 증여시점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85.5(2003년), 88(2004년), 88.9(2005년), 88.8(2006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24,529,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액수는 다음과 같이 합계 25,627,934원이 된다.

연도	수익액	환산액
2003년	12,309,000원	13,086,410원
2004년	4,030,000원	4,162,806원
2005년	4,310,000원	4,406,962원
2006년	3,880,000원	3,971,756원
합계	24,529,000원	25,627,934원

라) C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C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107,523,274원(=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81,895,340원 + C의 특별수익 25,627,934원)

○ C의 법정상속분액: 19,549,686원(= 간주상속재산 107,523,274원 × C의 법정상속분 2/11, 원 미만 버림)

○ C의 구체적 상속분: 0원(법정상속분액 19,549,686원 - 특별수익 25,627,934원 < 0 이므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

3) 결국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24,529,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C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는 C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인 F, H와 이미 사망한 G의 상속인들까지도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는바, 다수의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채무면탈보다는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성립된 날(갑 제1호증)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별지

1) 시가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상속개시 당시 해당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내지 개별주택가격(을 제2호증의 1 내지9)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